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1.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1.1 계획의 목적

- 현행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및 행정구역 단위로 수행되어 왔으나,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의 수립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하천의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며, 수계 내 하천간의 기본계획 수립시기, 수립주체 등이 서로 상이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시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남강 최상류권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수년이 경과하고,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
- 따라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우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에 의거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 1.3 추진경위

- 2014. 07. 31 :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2015. 11. 16 : 남강 최상류·가화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9. 07. 2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심의 요청
- 2019. 07. 24 ~ 08.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수렴(서면심의)
- 2019. 08. 26 ~ 09. 09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1. 01. 26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 2021. 01. 26 ~ 02. 25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공람
- 2021. 02. 17 ~ 19 : 주민설명회 개최
- 2021. 10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021.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 1.4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나. 위 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서상면, 서하면, 안의면, 수동면, 지곡면 일원

다. 계획수립자 및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하천관리청 : 경상남도, 함양군(하천법 제8조)
- 개별 하천점용 허가시 사업 허가권자 : 경상남도, 함양군(하천법 제33조)

하천법	
<p>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                      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                      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                      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②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                      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                      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                      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p>
<p>법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3.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p>

**라.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 2014년 ~ 2021년

**마. 공간적 범위**

○ 하천개소 : 12개소

○ 하천연장 : 128.78km

**[표 1.4-1] 계획하천 현황**

번호	하천명	구 간	하천연장 (km)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	비 고
1	남 강	경남 함양군 안의면과 서하면경계 ~ 경남 함양군 유림면 남강(국가하천) 기점	42.64	46.29	321.62	
2	대 남 천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 경남 함양군 서상면 남강(지방) 합류점	2.80	6.89	13.13	
3	송 계 천	경남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 경남 함양군 서하면 남강(지방) 합류점	4.30	7.30	19.23	
4	지 우 천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남강(지방) 합류점	8.16	14.57	50.11	
5	귀 곡 천	경남 함양군 안의면 귀곡리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남강(지방) 합류점	3.18	5.80	10.26	
6	안 의 천	경남 함양군 안의면 초동리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남강(지방) 합류점	11.22	12.87	25.32	
7	지 곡 천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남강(지방) 합류점	5.85	7.70	18.89	
8	함양위천	경남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의 경계 ~ 경남 함양군 남강(국가, 지방경계) 합류점	24.70	27.35	178.43	
9	평 정 천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 경남 함양군 백전면 함양위천(지방) 합류점	2.75	5.05	13.41	
10	옥 계 천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 경남 함양군 병곡면 함양위천(지방) 합류점	7.09	9.95	16.20	
11	광 평 천	경남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 경남 함양군 병곡면 함양위천(지방) 합류점	5.51	8.06	16.00	
12	구 룡 천	경남 함양군 함양면 죽림리 ~ 경남 함양군 함양면 함양위천(지방) 합류점	10.58	13.33	32.66	
계		-	128.78	165.16	715.26	

**바. 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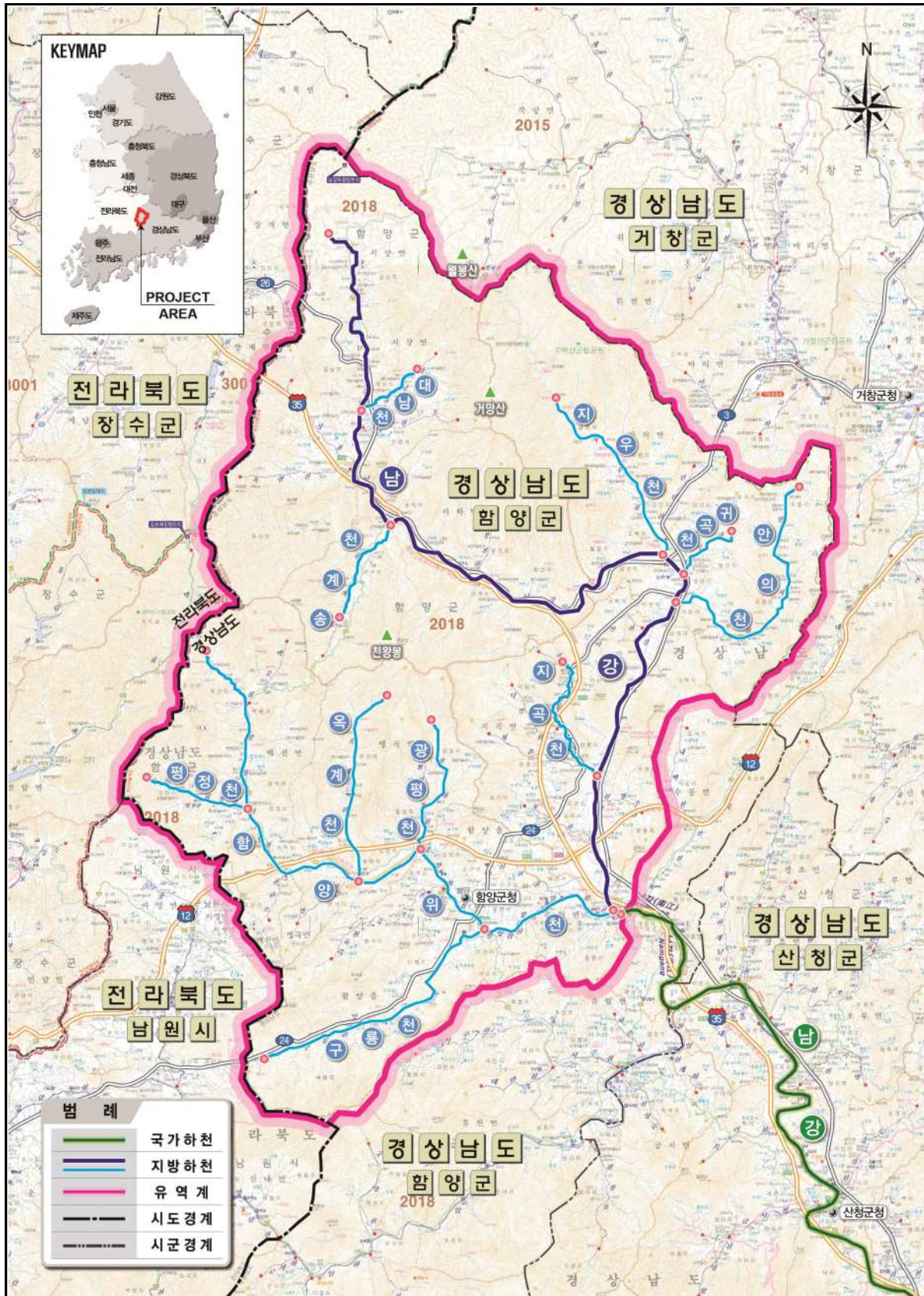
- 남강 최상류권역 내 하천 12개소의 시설물 계획은 축제 19,739m, 보축 24,367m, 호안 1,316m, 배수시설물 468개소, 보 및 낙차공 257개소, 교량 239개소 등으로 계획하였음

[표 1.4-2] 하천 시설물 계획

하천명	제방 및 호안			배수시설물				보 및 낙차공				교량					비고
	축제	보축	호안	계	존치	개설	철폐	계	존치	개설	철폐	계	존치	개설	철폐	신설	
총 계	19,739	24,367	1,316	468	354	114	-	257	148	109	-	239	147	85	2	3	
남강	4,281	10,141	1,162	100	83	17	-	40	31	9	-	55	35	19	-	1	
대남천	-	998	-	8	6	2	-	12	9	3	-	12	6	6	-	-	
송계천	639	286	-	9	5	4	-	16	12	4	-	7	4	3	-	-	
지우천	-	1,130	-	27	15	12	-	24	20	4	-	15	12	3	-	-	
귀곡천	527	155	-	23	16	7	-	16	10	6	-	10	7	1	-	-	
안의천	2,955	2,555	-	68	50	18	-	36	27	9	-	23	17	6	-	-	
지곡천	1,505	491	-	13	7	6	-	21	13	8	-	25	15	10	-	-	
함양위천	7,265	4,578	154	148	126	22	-	45	14	31	-	38	23	13	1	1	
평정천	1,516	201	-	9	5	4	-	9	-	9	-	8	3	5	-	-	
옥계천	394	1,236	-	24	11	13	-	12	5	7	-	15	8	7	-	-	
광평천	657	429	-	14	13	1	-	10	3	7	-	15	11	4	-	-	
구룡천	-	2,167	-	25	17	8	-	16	4	12	-	16	6	8	1	1	

**1.5 계획의 기대효과**

- 개수 및 통수능력 확보에 따른 원활한 우수배제로 홍수피해 최소화
-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 조성
- 합리적인 하천 공간활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관 개선
- 하천의 자연적 형태 및 유역개발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하천환경 보전 및 개발 가능



(그림 1-1) 계획하천 위치도

##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1 주민의견 수렴 개요

- 본 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에 의거 주민과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가.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나. 협의기관

- 협의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중앙일간지 : 시대일보
- 지방일간지 : 경남도민일보
- 정보통신망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라. 공람·공고 내용

- 공람기간 : 2021.01.26. ~ 02.25 (21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함양군청, 함양읍사무소, 서상면사무소, 서하면사무소, 안의면사무소, 지곡면사무소, 수동면사무소, 병곡면사무소, 백전면사무소
- 주민의견 제출기간 : 2021년 3월 4일까지(공람일로부터 공람종료후 7일 이내)
- 의견제출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 의견제출 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마.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개최장소	개최일시	비 고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2021. 02. 17(수) 09:30	남강, 함양위천, 구룡천
	병곡면사무소	2021. 02. 17(수) 13:30	함양위천, 옥계천, 광평천
	백전면사무소	2021. 02. 17(수) 16:00	함양위천, 평정천
	안의면사무소	2021. 02. 18(목) 09:30	남강,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면사무소	2021. 02. 18(목) 13:30	남강, 지곡천
	수동면사무소	2021. 02. 18(목) 16:00	남강
	서상면사무소	2021. 02. 19(금) 09:30	남강, 대남천
	서하면사무소	2021. 02. 19(금) 13:30	남강, 송계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12호

###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안), 전력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의 수립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권역권정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남강 최상류권역의 하천기본계획(안),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경정을 위하여 「도지아용규제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나. 시행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다. 규모: 총연장 129.26km(12개소)

비밀번호	구간	연장(km)
남 강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서하면계곡~함양군 유림면 남강(국기하천) 거점	42.64
대 남 천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함양군 서상면 남강(지방) 합류점	2.80
송 계 천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곡리~함양군 서하면 남강(지방) 합류점	5.69
지 우 천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희리~함양군 안의면 남강(지방) 합류점	6.29
귀 곡 천	경남 함양군 안의면 귀곡리~함양군 안의면 남강(지방) 합류점	3.38
안 의 천	경남 함양군 안의면 옥계리~함양군 안의면 남강(지방) 합류점	11.22
지 곡 천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함양군 지곡면 남강(지방) 합류점	5.25
합양위천	경남 함양군 함양면 함양읍과 병곡면의 정계~함양군 함양면 남강(국가 지방계) 합류점	34.70
평 정 천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함양군 백전면 함양위천(지방) 합류점	3.98
옥 계 천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함양군 병곡면 함양위천(지방) 합류점	7.09
광 평 천	경남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함양군 병곡면 함양위천(지방) 합류점	5.51
구 룡 천	경남 함양군 함양면 죽림리~함양군 함양면 함양위천(지방) 합류점	10.58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1년 1월 26일 ~ 2월 25일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서상면사무소, 시하면사무소, 안의면사무소, 지곡면사무소, 수동면사무소, 함양읍사무소, 함양군청, 병곡면사무소, 백전면사무소  
다. 전역권정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함양군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http://www.siss.go.kr/>)에 게재 하. 보고서, 평가서, 지형도면 등 공람자료는 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개최장소	일시	비 고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2021. 02. 17(수) 09:30	남강, 함양위천, 구룡천
	병곡면사무소	2021. 02. 17(수) 13:30	함양위천, 옥계천, 광평천
	백전면사무소	2021. 02. 17(수) 16:00	함양위천, 평정천
	안의면사무소	2021. 02. 18(목) 09:30	남강,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면사무소	2021. 02. 18(목) 13:30	남강, 지곡천
	수동면사무소	2021. 02. 18(목) 16:00	남강
	서상면사무소	2021. 02. 19(금) 09:30	남강, 대남천
	서하면사무소	2021. 02. 19(금) 13:30	남강, 송계천

\* 최근 14일 이내에 여행력이 있거나 병역, 기형 등 조류가 중상이 없는 경우 설명회 참석을 권장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는 않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4.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저감 방안에 관한 의견, 공람회 개최에 대한 의견 등  
나. 제출기간: 공람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51-990-1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일보(2021.01.26(화))

(그림 2.1-1)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12호

##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의 수립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남강 최상류권역의 하천기본계획(안),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나.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다. 규모 : 총연장 129.36km (12개소)

하천명	구간	연장(km)
남 강	경남 합양군 안의면과 서하면 경계~합양군 유림면 남강(국가하천) 기점	42.64
대 남 천	경남 합양군 서상면 대남리~합양군 서상면 남강(지방) 합류점	2.80
송 계 천	경남 합양군 서하면 운곡리~합양군 서하면 남강(지방) 합류점	5.69
지 우 천	경남 합양군 안의면 상원리~합양군 안의면 남강(지방) 합류점	6.22
귀 곡 천	경남 합양군 안의면 귀곡리~합양군 안의면 남강(지방) 합류점	3.18
안 의 천	경남 합양군 안의면 초동리~합양군 안의면 남강(지방) 합류점	11.22
지 곡 천	경남 합양군 지곡면 마산리~합양군 지곡면 남강(지방) 합류점	5.85
함양위천	경남 합양군 함양면 함양읍과 병곡면의 경계~합양군 함양면 남강(국가, 지방경계) 합류점	24.70
평 정 천	경남 합양군 백전면 대안리~합양군 백전면 함양위천(지방) 합류점	3.88
옥 계 천	경남 합양군 병곡면 원신리~합양군 병곡면 함양위천(지방) 합류점	7.09
광 평 천	경남 합양군 병곡면 광평리~합양군 병곡면 함양위천(지방) 합류점	5.51
구 룡 천	경남 합양군 함양면 죽림리~합양군 함양면 함양위천(지방) 합류점	10.58

####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21년 1월 26일 ~ 2월 25일 (공휴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서상면사무소, 서하면사무소, 안의면사무소, 지곡면사무소, 수동면사무소, 함양읍사무소, 함양군청, 병곡면사무소, 백전면사무소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합양군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
- 라. 보고서, 평가서, 지형도면 등 공람자료는 공람장소에 비치

####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개최장소	일시	비고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2021. 02. 17(수) 09:30	남강, 함양위천, 구룡천
	병곡면사무소	2021. 02. 17(수) 13:30	함양위천, 옥계천, 광평천
	백전면사무소	2021. 02. 17(수) 16:00	함양위천, 평정천
	안의면사무소	2021. 02. 18(목) 09:30	남강,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면사무소	2021. 02. 18(목) 13:30	남강, 지곡천
	수동면사무소	2021. 02. 18(목) 16:00	남강
	서상면사무소	2021. 02. 19(금) 09:30	남강, 대남천
	서하면사무소	2021. 02. 19(금) 13:30	남강, 송계천

\* 최근 14일 이내에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설명회 참석을 지양하시고,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4. 의견서 제출

- 가. 제출내용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저감 방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대한 의견 등
- 나.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 라.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51-660-12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8\*16.5)cm

경남도민일보(2021.01.26(화))

(그림 2.1-1) 계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통합검색

민원마당
국민마당
국토지식정보
알림마당
정보마당
우리청소개
부산청뉴스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국토관리청공고
- 사업·입찰안내
- 부산국토청 보도자료
- 국토부 보도자료
- 인사/채용
- 사전규격공고
- 법령자료

## 국토관리청공고

제목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전락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작성자	김종규
전화번호	051-660-1208		
등록일	2021-01-26	조회	117
첨부파일 1	남강 최상류권역 전락환경영가(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hwp <a href="#">Q 바로가기</a>		
첨부파일 2	남강 최상류권역 전락(초안) 요약문.pdf <a href="#">Q 바로가기</a>		
첨부파일 3	2021012615333438_주민의견 제출서(양식2).hwp <a href="#">Q 바로가기</a>		
첨부파일 4	2021012615333444_주민의견 제출서(양식1).hwp <a href="#">Q 바로가기</a>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12호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안), 전락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남강 최상류권역(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락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 「하천법」 제10조,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남강 최상류권역(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안),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부.  
3. 주민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끝.

목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그림 2.1-1) 계속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사용자 메뉴판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조회
협의동계
국민참여
건강영향평가

**국민참여**  
Public participation

협의진행현황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평가서 초안 공람

행정처분현황

사용자지원

### ❖ 평가서 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명	남강 최상유역권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사업위치	변형		
	소재지	면적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안의내동길 18) 유원면, 서상면, 서하면, 지곡면, 병곡면 일원		
협의대상 (협의관련법령)	행정계획 (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사업구분	하천이용 / 하천기본계획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규모 : 129.36km 사업비 : 25 억원		

초안공람

주인의견수렴

협의업무 담당

협의기관	너동강유역환경청	담당자	손원우
담당부서		E-mail	wonwoo81@korea.kr
전화번호	055-211-1648	Fax번호	055-211-1606

초안공람

초안	11000 부록_4(현황질 측정).pdf 11000 부록_5(용어 및 인용문헌).pdf 세대가.pdf 0000 표지 및 제자.pdf 0100 요약문.pdf 0200 개발기본계획의 개요.pdf 0300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pdf 0400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pdf 0500 지역개황.pdf 060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pdf 0700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pdf 0800 개발기본계획의 목적성.pdf 09111 동시물상.pdf 09112 자연환경자산.pdf 09120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pdf 09130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df 09141 수질.pdf 09142 수리수문.pdf 09211 기상.pdf 09212 대기질.pdf 09213 온실가스.pdf 09214 도양.pdf 09215 소음진동.pdf 09230 차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pdf 09310 환경친화적 도시이음.pdf 10000 종합평가 및 결론.pdf 11000 부록_1(평가대행자 연락처 등).pdf 11000 부록_2(동식물상_목록).pdf 11000 부록_3(동식물상_현시조사표 및 출생증명자료).pdf 09220 환경거주사상의 적절성.pdf
----	--

초안 공고일	2021.01.26	초안공람 기간	2021.01.26 ~ 2021.02.25
공람 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서상면사무소, 서하면사무소, 안의면사무소, 지곡면사무소, 수동면사무소, 함양읍사무소, 함양군청, 병곡면사무소, 백전면사무소		
설명회 일시	2021년 02월 17일~2021년 02월 19일		
설명회 장소	함양읍사무소, 병곡면사무소, 백전면사무소, 안의면사무소, 지곡면사무소, 수동면사무소, 서상면사무소, 서하면사무소		
의견제출 기간	2021.01.26 ~ 2021.03.04		
부서명		전화번호	

목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그림 2.1-1) 계속

- 10 -

<p>함양읍</p>	
<p>병곡면</p>	
<p>백전면</p>	
<p>안의면</p>	

(그림 2.1-2) 외부 현수막 게시

<p>지곡면</p>	
<p>수동면</p>	
<p>서상면</p>	
<p>서하면</p>	

(그림 2.1-2) 계속

<p>함양읍</p>		
<p>병곡면</p>		
<p>백전면</p>		
<p>안의면</p>		

(그림 2.1-3) 주민설명회 개최 전경

<p>지곡면</p>		
<p>수동면</p>		
<p>서상면</p>		
<p>서하면</p>		

(그림 2.1-3) 계속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남강 피상유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하천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사업장위치: 남강 피상유권역 내 12개 하천(경남 함양군 관내 남강, 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함양위천, 평정천, 옥계천, 광평천, 구룡천) 설명회일시: 2021년 2월 17일 09:30 설명회장소: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사업명: 남강 피상유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하천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사업장위치: 남강 피상유권역 내 12개 하천(경남 함양군 관내 남강, 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함양위천, 평정천, 옥계천, 광평천, 구룡천) 설명회일시: 2021년 2월 17일 13:30 설명회장소: 병곡면사무소				
번호	성명	주소	채운	서명	번호	성명	주소	채운	서명
1	김영자				1	김용대			
2	김주희				2	박관영			
3	김승준				3	김영희			
4	김민희				4	박희정			
5	김영희				5	김민철			
6	김영희				6	김용대			
					7	김영희			
					8	김민철			
					9	김민철			
					10	김민철			
					11	김민철			
					12	김민철			
					13	김민철			
					14	김민철			
					15	김민철			
					16	김민철			
					17	김민철			
					18	김민철			
					19	김민철			
					20	김민철			
					21	김민철			
					22	김민철			
					23	김민철			
					24	김민철			
					25	김민철			
					26	김민철			
					27	김민철			
					28	김민철			
					29	김민철			
					30	김민철			
					31	김민철			
					32	김민철			
					33	김민철			
					34	김민철			
					35	김민철			
					36	김민철			
					37	김민철			
					38	김민철			
					39	김민철			
					40	김민철			
					41	김민철			
					42	김민철			
					43	김민철			
					44	김민철			
					45	김민철			
					46	김민철			
					47	김민철			
					48	김민철			
					49	김민철			
					50	김민철			
					51	김민철			
					52	김민철			
					53	김민철			
					54	김민철			
					55	김민철			
					56	김민철			
					57	김민철			
					58	김민철			
					59	김민철			
					60	김민철			
					61	김민철			
					62	김민철			
					63	김민철			
					64	김민철			
					65	김민철			
					66	김민철			
					67	김민철			
					68	김민철			
					69	김민철			
					70	김민철			
					71	김민철			
					72	김민철			
					73	김민철			
					74	김민철			
					75	김민철			
					76	김민철			
					77	김민철			
					78	김민철			
					79	김민철			
					80	김민철			
					81	김민철			
					82	김민철			
					83	김민철			
					84	김민철			
					85	김민철			
					86	김민철			
					87	김민철			
					88	김민철			
					89	김민철			
					90	김민철			
					91	김민철			
					92	김민철			
					93	김민철			
					94	김민철			
					95	김민철			
					96	김민철			
					97	김민철			
					98	김민철			
					99	김민철			
					100	김민철			

함양읍

병곡면 1

병곡면 2

병곡면 3

(그림 2.1-4)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하천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사 업 장 위 치	남강 최상류권역 내 12개 하천(경남 함양군 관내 남강, 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함양위천, 평정천, 옥계천, 팔평천, 구룡천)			
실 명 회 일 시	2021년 2월 18일 13:30	실명회 장소	지곡면사무소	
번호	성명	주 소	채 운	서 명
	고상호			
	김기운			
	박민욱			
	김수익			
	박상남			
	유석득			
	송수영			
	이주희			
	정주환			
	김대철			
	김영석			
	김채승			
	유상기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하천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사 업 장 위 치	남강 최상류권역 내 12개 하천(경남 함양군 관내 남강, 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함양위천, 평정천, 옥계천, 팔평천, 구룡천)			
실 명 회 일 시	2021년 2월 19일 09:30	실명회 장소	서상면사무소	
번호	성명	주 소	채 운	서 명
	김준호			
	김재민			
	김상민			
	김철호			
	김우현			
	김영민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하천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사 업 장 위 치	남강 최상류권역 내 12개 하천(경남 함양군 관내 남강, 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함양위천, 평정천, 옥계천, 팔평천, 구룡천)			
실 명 회 일 시	2021년 2월 18일 16:00	실명회 장소	수동면사무소	
번호	성명	주 소	채 운	서 명
	김준섭			
	양정민			
	박병호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하천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사 업 장 위 치	남강 최상류권역 내 12개 하천(경남 함양군 관내 남강, 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함양위천, 평정천, 옥계천, 팔평천, 구룡천)			
실 명 회 일 시	2021년 2월 19일 09:30	실명회 장소	서상면사무소	
번호	성명	주 소	채 운	서 명
	신준호			
	김재민			
	김상민			
	김철호			
	김우현			
	김영민			

(그림 2.1-4) 계속



## 8.2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 8.2.1 주민의견

#### 가.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답변내용)	비고
함양읍	○ 구룡천 하천수질 조사지점이 어디인지? 인근 도로공사로 인해 구룡천 영향이 있음	○ 구룡천 수질조사지점은 하천 상·중·하류 3개소(W-29, 30, 31지점)이며, 도로공사로 인한 토사 등의 문제는 관련 지자체에 문의해야함	반영
	○ 구룡천 하천조사 지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안됨 ○ 구룡저수지 하류부 추가조사가 필요함 ○ 실제 공사는 언제 되는지?	○ 죽림리, 구룡리, 이은리 3개소에서 측정하였음 ○ 구룡저수지 하류부에 1지점(W-31지점) 조사를 수행함 ○ 경상남도 예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후에 실시설계 등 진행이 될 예정임	반영
	○ 주민설명회 취지가 계획수립시 의견을 반영을 해야하는 것임 ○ 4대강 사업과 다른것인지?	○ 주민설명회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 4대강 사업과는 상이한 사업임	-
	○ 구룡저수지 하류부 추가조사가 필요함	○ 구룡저수지 하류부에 1지점(W-31지점) 조사를 수행함	반영
병곡면	○ 공사시 살수설치, 오탁방지막 설치가 잘안되는 부분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고쳐지는지?	○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이며, 공사가 수반되지 않음	-
	○ 하천진입도로가 필요함 ○ 설계 마무리 하기 전에 한번더 주민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단계로 추후 실시설계시 반영되는 사항임	추후 반영
	○ 옥계천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름변경도 가능한지	○ 하천명의 변경은 본 계획수립의 과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백전면	○ 동백교 상류쪽으로 축사가 있으니 반영해서 수질측정을 해야함	○ 동백교 상류부(W-46지점)에 수질측정을 실시함	반영
	○ 공사는 언제 시작되는지?	○ 경상남도 예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후에 실시설계 등 진행이 될 예정임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답변내용)	비고
안의면	○작년 장마로 인해 피해가 컸으며, 남강하류의 수위가 우리마을보다 더 높아져서 주민들이 직접 응급조치를 하고있음(7/31 새벽4시, 8/8 사진을 찍어둔게 있음)가동보 계획을 잡아 야 함	○계획하천의 홍수위 및 홍수량을 바탕으로 시설물 능력검토를 실시하여 개수계획을 수립함	부분 반영
	○금회 안의천 계획수립대상 구간이 어디인지?	○안의면 초동리에서 남강(지방) 합류부 까지 대상구간임	-
	○공사는 언제 시작되는지?	○경상남도 예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후에 실시설계 등 진행이 될 예정임	-
지곡면	○남강 상류쪽 보가 존치되는건지? 강우가 많을 경우에는 하류부는 역류가 되어 농경지가 침수됨	○배수구조물 등의 능력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함	반영
	○하천 준설한지가 오래됐는데 추가 준설이 필요함	○준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위배되는 사항으로 가급적 지양하고 있음	미반영
	○하천 주위의 개인사유지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감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감나무 위치에 제방 등이 설치될 경우 보상절차가 진행되며, 추후 실시설계시 세부조사를 시행할 것임	추후 반영
	○주민 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려고 온 건데 반영이 안됨. 현장답사가 필요함	○기본계획단계에서의 현장조사는 완료하였으며, 추후 실시설계시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부분 반영
	○하천준설해서 제방도 높이고, 현장 조사시 마을이장 주민들과 같이 조사를 해야함	○기본계획 완료 후 실시설계단계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수동면	○보는 재가설만 있는지? 신설계획은 없는지?	○보 및 낙차공은 능력검토에 따라 존치 및 재가설 계획을 수립함	반영
	○작년 장마로 물이 넘쳤는데 준설계획은 없는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농사짓는 사람들도 중요함	○함양군에서 유지 보수를 실시중에 있어 함양군 관련부서에 문의가 필요함	-
	○재가설이 4개소인데 배포자료에는 1개소 밖에 없음	○남강의 보 재가설계획은 능력검토에 따라 9개소로 계획함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답변내용)	비고
서상면	○소하천 수질이 안좋은데 소하천은 조사를 안하는지?	○소하천은 과업대상이 아니며, 추후 함양군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별도로 조사할 예정임	추후 반영
	○구전마을 앞은 소하천인데 홍수시 논밭 침수가 일어나고 정비가 잘 안됨. 구전마을 앞 하천도 지방하천으로 하면 안되는지	○소하천, 지방하천 지정은 군과 도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	-
	○하천 옆에 양계장이 있는 오·폐수가 직방류 되지 않도록 반영이 필요함	○하천 옆 양계장의 오·폐수처리계획은 관계기관과의 별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	-
	○대남천 상류부 홍수피해가 있었으나, 상류쪽 하천 양안에 계획이 아무것도 없음. 상류가 튼튼해야 하류도 튼튼한 것임	○대남천 내 보축 998m, 배수시설물 8개소(존치6개소, 재가설 2개소)를 계획함	반영
	○서상면 오·폐수 처리시설이 안되는 지역이 있음. 확인해보니 인구가 적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반영을 시켜줄수 있는지?	○본 용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므로 타부서에 요청을 해야하는 부분임	-
	○하천에 풀이 너무 많아서 하천정비시 돌을 깔아야 함	○하천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는 금회 과업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본계획 수립은 하천정비의 큰 틀을 잡는 부분임	-
서하면	○공사는 언제 시행되는지?	○경상남도 예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후에 실시설계 등 진행이 될 예정임	-
	○공사가 길어지면 유지관리가 잘안됨. 장비정비 등이 잘 안지켜지고 오탁방지막 등은 비오고 유실되면 수거도 안되고 있음 추후 공사시에 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	○의견주신 부분은 향후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단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사 진 대 지



건 명 신당 새별지수지 준설사업  
내 용 남강4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가동으로 해당 반영 건의 (사유: 남강4모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통행단절 피해)



건 명 신당 새별지수지 준설사업  
내 용 남강4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가동으로 해당 반영 건의 (사유: 남강4모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통행단절 피해)

주민의견서(김○○) - 3



주민의견서(김○○)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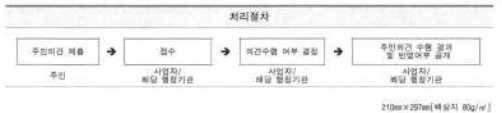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시)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사업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의견제출자	성명 김 <input type="text"/> 생년월일 <input type="text"/> 주소 함양군 민간용수계류 181 전화번호 <input type="text"/>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이동마을 배, 취원개발, 의. 김바산 화석의 비정질 노지면적 제방 정비계획 등항  사유: 취원-취원 마을안길 부의의점 - 계획 필요성(배우하는 곳에 <노지면적> 필요), 불필요 - 이유(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제출자 김    
시정·군수·구청장 귀하



주민의견서(김○○) - 1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상 작성 용역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사업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의견제출자	성명 김 <input type="text"/> 생년월일 <input type="text"/> 주소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53 전화번호 <input type="text"/>
하천기본계획, 하천구역 결정, 용수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함양군 지곡면 거평마을 앞 약 100m 농지에 비닐하우스 양파특작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삼강천이 마을보가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매년 수량부족으로 프크레인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수로작업을 하는데 정비예산과 주민의 고령화로 인력동원의 어려움은 겪고 있으며 "거평마을 보의 조속한 설치" 있어야 한다 (삼강교로 부터 약 300미터 지점)  ※ 삼강천 상류 마을보 설치 희망 · 삼호, 상백마을 보 · 우영의 마을보 · 호의 마을보

「하천법」 제10조 제4항, 제12조 제3항 내지 제25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거평마을 이강 제출자 강

주민의견서(강○○) - 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남강상류 거평마을 보 설치의견 제출자						
연번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지역	
1	거평	남	31			거평
2	의왕	수	31			의왕
3	거평	순	31			거평
4	거평	신	30		손영민	거평
5	의왕	백	80		(전화번호)	의왕
6		간	19		김	거평
7	거평	남	48		김민호	거평
8	거평	홍	48		김영호	거평
9	거평	정	11		김영호	거평
10	거평	양	44		김영호	거평
11	의왕	홍	61		(전화번호)	의왕
12	거평	신	41		김영호	거평
13	거평	신	64		(전화번호)	거평
14	거평	신	66		김영호	거평
15	거평	남	41		김영호	거평
16	거평	신	44		김영호	거평
17	거평	신	41		(전화번호)	거평
18	거평	신	46		김영호	거평
19	거평	신	60		김영호	거평
20	거평	신	61		김영호	거평

남강상류 거평마을 보 설치의견 제출자						
연번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지역	
1	거평	정	41			거평
2		신	31			거평
3	거평	신	46			거평
4		신	10			거평
5	거평	남	18			거평
6	거평	신	45			거평
7	거평	신	11			거평
8		신	41			거평
9	거평	신	41			거평
10	거평	신	41			거평
11	거평	신	31			거평
12	거평	신	61			거평
13						
14						
15						
16						
17						
18						
19						
20						

주민의견서(강○○) - 2

주민의견서(강○○) - 3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상 작성 용역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사업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의견제출자: 성명 강, 생년월일 19, 주소 함양군 거평면 거평길 53, 전화번호 010-XXXX-XXXX

하천기본계획, 하천구역 설정,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거평마을을 강 양안권 제방 밑 봉리 (거평면 칠현리 44-1 ~ 거평면 칠현리 114-4 번지간 땅) 봉리와 양안권이 강바닥선의 높이가 거의 같아 위치가 강물이 범기하면 봉리의 최상류 봉리 양안권으로 흘러사라지 못하니, 양안권이 봉리 최상류로 역류하여 6시간 이상 봉리가 침수되고 각종 오물과 퇴적물이 들끓어 농작물밭 들은 등 피해를 입은 것이 "봉리의 상류와 최상류" 형식이 되어야 할.

2021년 2월 19일  
 거평마을이장 제출자 강

주민의견서(강○○) - 4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상 작성 용역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사업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의견제출자: 성명 정, 생년월일 19, 주소 함양군 거평면 칠현리 600-1, 전화번호 010-XXXX-XXXX

하천기본계획, 하천구역 설정,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하천정내계획(안)  
 칠현리 (거평면) 봉리 30m경로  
 칠현쪽 하천모양 및 하천 재방류 확충부족  
 드림이다.

「하천법」 제10조 제4항, 제12조 제3항 내지 제25조 제8항 및 「도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제출자 정

주민의견서(정○○) - 1

다. 주민 공람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답변내용)	비고
김○○	○칠형정 건강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노선길이 L=5.07km 중 서상면 소재지에서 방지고, 구평마을, 중훈담, 성무보를 거쳐 다시 서상면 소재지까지 연결되는 산책로가 성무보에서 단절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위하여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성무보 하류 약 20m 지점에 징검다리 계획을 반영토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징검다리 신설은 하천의 자연성 및 연속성을 저해하며, 징검다리는 수위상승의 원인으로 치수적으로 불리한 구조물임 ○따라서, 인공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미반영
김○○	○남강4보 하천 기본계획 수립시 개량 계획에서 가동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올림마을 주민 모두가 바랍니다	○보 및 낙차공 능력검토 및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강제4보(No.12+031)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남강제4보 인근은 여유고 부족구간으로 양안에 보축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부분 반영
	○하천계획 수립시 현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공청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공청회 개최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김○○	○내동마을 내 하천제방, 미정비구간 하원리 내동길 42번지 제방 정비계획 요청 - 사유 : 지우천 마을안길 붕괴위험	○지우천(No.3+900)은 현재 포장이 완료된 구간으로 제내지는 굴입하도 형성되어 있으며, 치수적으로 안전한 구간임 ○또한, 제방사면은 다수의 수목으로 형성되어있어 환경적요인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미반영
강○○	○함양군 지곡면 거평마을 앞 약50m 농지에 벼농사와 양과특작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남강천에 마을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년 수량부족으로 포크레인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수로작업을 하는 등 경비손실과 주민의 고령화로 인력동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거평마을보의 조속한 설치가 있어야 함(남효교로부터 약 300m 지점)	○보의 신설은 치수적으로 불리한 구조물로 수위상승의 원인이 되어 보 상류측 제방에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됨 ○또한, 하천의 자연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신설계획은 최소화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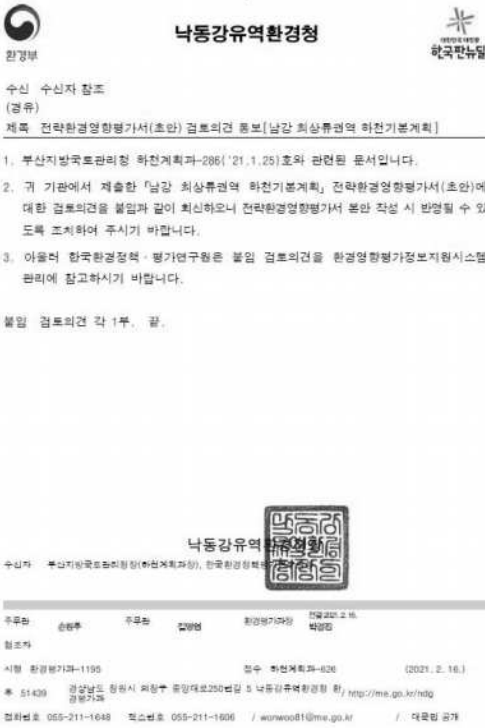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답변내용)	비고
강○○	○거평마을 앞 남강천 제방 밑 농지 (지곡면 창평리 48-1~지곡면 창평리 114-4번지간 답)와 남강천의 강바닥과의 높이가 거의 같아 우기에 강물이 불어나면 농지의 퇴수로 물이 남강천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남강천의 물이 퇴수로로 역류하여 6시간 이상 농경지가 침수되고 각종 오물과 퇴적물이 들어와 농작물을 덮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농지의 성토와 퇴수로 등이 정비되어야 함	○지곡면 창평리 48-1 ~ 114-4 구간은 여유고 부족구간으로 보축계획(보축우3지구 L=1,132m)을 수립하여 치수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반영
정○○	○하천정비계획(안) - 창평리(지곡제1보) 보 밑 30m정도 하천폭 확인요망 및 하천제방 폭 확충부탁드립니다	○지곡천 지곡1보 인근은 홍수위 및 여유고 부족구간으로 좌안은 축제(확폭)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안은 보축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반영

## 8.2.2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견

### 가. 관계 행정기관 공문 및 검토의견

#### 1) 낙동강유역환경청

 <p>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판뉴딜</p> <p>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통보[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p> <p>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208(21.1.25)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p> <p>2. 귀 기관에서 제출한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3. 아울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붙임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붙임 검토의견 각 1부, 끝.</p> <p>낙동강유역환경청</p> <p>수신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p>주무관 송원주 주무관 김명현 환경평가과장 (2021. 2. 16.) 참조자</p> <p>시행 환경평가과-1195 접수 하천계획과-626 (2021. 2. 16.) ☎ 51439 경남남도 창원시 위동수 중앙대로250번길 3 낙동강유역환경청 http://me.go.kr/ndg 전화번호 055-211-1648 팩스번호 055-211-1606 / wonwoo8@me.go.kr / 대한민국</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략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b>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p> <p><b>I. 총괄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유림면, 서상면, 서하면, 지곡면, 함양면, 벽진면, 방곡면 일원 남강 최상류권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검토의견임</li> <li>- 남강, 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함양위천, 평정천, 오계천, 광평천, 구룡천(12기스, 129.36km)</li> <li>○ 12개의 지방하천을 하나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수행함에 따라 평가서 내 각 지방하천이 가지는 생태적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적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함. 이에 하천별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작성 및 평가문 수행하여야 함</li> <li>○ 하천별 계획 수립 시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하되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에 대하여 개수계획을 지양하고 홍수방어 수단·방법 대안비교를 통하여 치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 보 및 낙차공 계획의 경우 하천의 연속성 및 수생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절거를 우선으로 계획</li> </ul> <p><b>II. 세부 검토의견</b></p> <p><b>1. 계획의 적정성</b></p> <p><b>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풍수해지감종합계획은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재해의 예방, 대응, 복구를 총괄하는 계획으로서 지역방재의 근간이 되는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본 하천기본 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과의 무합 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하천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계획하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및 급회 시설물계획과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낙동강유역환경청 공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1/8)</p>

<p>연계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또한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계획하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관련 계획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물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p><b>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절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계획 대안평가) 계획하천(12개소)의 주요 시설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천구간의 현황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에 따른 항목별 장·단점(이·지수적 효과 및 환경영향)을 비교·분석한 대안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하천의 계획구간(또는 공간관리계획)별 제방 및 호안 설치에 관한 수단·방법 대안의 장·단점(필요성·환경영향) 비교·분석</li> <li>- 주요 형식시설물(보 및 낙차공)에 대해 계획대안(철거, 유지, 재가설)과 생태적 기법을 고려한 수단·방법대안의 장·단점(필요성·환경영향) 비교·분석</li> <li>-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대안에 대해 주요 수생태(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단점)이 발생하는 경우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li> </ul> </li> <li>○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 검토) 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확폭, 제방 및 호안 정비 등의 구조물 설치 위주의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최근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범위,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홍수관리구역 지정, 친변저류지 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li> </ul> <p><b>2. 입지의 타당성</b></p> <p><b>가. 자연환경의 보전</b></p> <p><b>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하천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서 계구성) 본 평가서는 경상남도 함양군 관내 8개 면에 분포하는 지방하천 12개소의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한 하천의 환경·생태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천기본계획에 수립된 계획으로 인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나, 급변 평가서는 생태환경적 측면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수행하는 데 있어 12개소의 지방하천을</li> </ul>	<p>하나의 사업처럼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각 하천이 가지는 생태적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의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농경지, 도심지 및 산림을 통과하는 하천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 생물의 생태기능적 측면이 다양성을 판단하기에 포괄적인 평가서로 작성됨</p> <p>다육이 지방하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최소한 각 하천별 공간적 분포 및 생태환경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고 작성된 급변 평가서의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됨</p> <p>※ 하천의 규모와 문포위치를 고려할 때 동일한 생물상에 대한 사업계획의 영향 여부는 생태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하천기본계획 수립대상 12개소 지방하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에 대해서는 각 하천별로 계구성하여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른 하천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영향예측 및 보존·보전·저감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계구성하여야 함</li> <li>※ 현재의 구성체계는 각 분류군에 대한 하천별 현황을 서로 비교하는 결과로 사업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반면 각 하천별로 분류군의 현황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하천별로 검토할 수 있음</li> </ul> <div data-bbox="890 705 1308 828"> <p>그림 1. 본 구성체계(제)에서 하천별 생태환경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계구성체계(주)</p> </div> <p><b>&lt;평가서를 계구성한 후 아래의 항목들을 검토·제시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 생태계 기능 보전) 사업대상 하천구간 중 합류부, 저수역, 식생보전 III등급지, 생태·자연도1등급지는 육수환경 보전측면에서의 계획 수립이 필요함, 따라서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은 사업시기에 따른 서식동물의 생활사(life history) 영향을 고려하는 등의 구체적인 생태계 영향을 분석</li> </ul>
<p>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2/8)</p>	<p>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3/8)</p>
<p>하고 수변식생 원형보존, 형식시설물(보, 낙차공 등) 철거 등과 같은 차별화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저감 및 보전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하천 굴곡성 및 구배를 유지하고 생태적 기능이 활발한 하천의 합류지점은 하천의 자연적인 연속성을 보전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li> <li>○ (보 및 낙차공 등 시설물계획) 해당 사업에서는 보 및 낙차공이 259개소 운영 중 인에도 시설물 현황(축전, 규모 등)만 제시되었을 뿐 시설물의 기능적 현황은 검토되지 않음, 또한 시설물의 형식단절로 인한 수생태계 이질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시설물 철거계획이 아닌 존치, 모두 제거설 및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의 연속성과 수생태계 지속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은 계획으로 판단되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하천 연속체 기능을 저해하는 형식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시설물 기능성 및 생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거를 우선으로 하되, 제거설 필요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li> <li>- 보 및 낙차공의 기능 분석 후 철거 및 존치 여부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li> <li>-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유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하천역에는 하상의 준위를 낮추고 소(埭)를 형성하여 증으로써 인공적 구조물의 보강 및 제거설을 억제토록 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li> <li>- 분가파하게 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단차 여울형 등 육수생물상의 분포구배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생태적 기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어도설치를 최소화</li> <li>- 어도설치 시 서식 어류의 생활사를 고려한 어도설치 계획 수립</li> <li>※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침서」(환경부, 2011) 219-227쪽 참조</li> <li>※ 「2017년도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례집」(환경부, 2017) [부록2] 머물과 소, 어도 설계 시 고려사항과 기술검토 기준(45-51쪽) 참조</li> <li>○ (호안공사 친환경적 공법 적용) 하천에 적용할 예정인 호안공법들은 구간별로 명확한 형식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하천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이 되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검토하여야 함</li> <li>- 식생의 도입을 지어(자연식 활기, 식생용비, 석죽행기 등의 형식)하고, 홍수 시</li> </ul>	<p>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 적용은 지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생태계 복원에 실질적 효과가 있으며 식생의 도입이 우수하고 호안의 안정성도 유지하는 저렴한 환경친화적인 공법들을 조사, 비교하여 적용</li> <li>○ (하천생태 및 법정보호종을 고려한 정비계획) 12개 지방하천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수달, 삼, 원앙, 황조롱이, 붉은배새매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문헌조사에서는 삼, 수달, 담비, 새호리기, 원앙 등 수변 및 하천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으로 인한 수계환경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수변·산림 생태계 건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li> <li>- 하천구역의 정비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서식 생물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이를 일정 기간별로(격월계 또는 계절별) 나누어 실시</li> <li>- 친천화 현상을 보이는 하천 구간의 정비는 갈수기를 활용하도록 공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인공 수량을 유지하는 하천은 수중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시기를 가급적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에 반영</li> <li>- 중천·서식이 확인된 다양한 법정보호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반영</li> <li>○ (다양한 수변 식물 보전방안) 수변부에 다양한 식물 군락은 최대한 보전하고 우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생에 대해서는 이들의 분포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귀화식물, 생태계 교란 식물종 분포의 증가는 수변생태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제거 및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야 함</li> <li>- 도시화지수 및 현재의 교란 정도에 따른 교란 식물 제거방안 수립</li> <li>- 하천에 서식 및 번식하는 조류 및 어류종을 고려한 제거관리 시기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제거 및 관리방안 수립·제시</li> <li>- 생태계 교란식물 서식 지점을 생태·자연도에 하천의 위치와 함께 제시</li> </ul> <p><b>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점의 고려) 계획하천인 남강 및 저수역 등에 기반암 하상, 토르, 포트홀, 편상절리 지형 등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li> </ul>
<p>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4/8)</p>	<p>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5/8)</p>



<p>하는 지형유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311-332쪽), 해당 하천에서의 사업 시행에 따른 지형유산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 구간 원형보전, 세부 정비계획 조정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p> <p><b>3) 수환경의 보전</b></p> <p>○ (적정규모의 개수계획 수립) 단순히 홍수량 크기에 따라 계획하천 전 구간에 동일한 수준의 홍수방어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향후 하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치수안정성, 하천의 자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방 윗쪽에 의한 침수피해 가능성, 제방 보강을 통해 보호되는 면적과 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특히 과도한 하폭확장은 축적 및 빙적구조물의 제거설을 수반하고, 하천구역 편입에 따라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하폭확장을 계획하기보다는 기존 제방 상태, 하천시설물, 토지이용 현황, 지형·지질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하폭을 결정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하천에서 발생한 홍수피해 이력(원인분석 포함)을 조사·제시</li> <li>- 설계기준(홍수량 크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 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과도한 치수계획 수립을 지양</li> <li>- 우수한 산면역과 연계된 하천 구간은 수변정반 및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li> <li>- 무제부 구간은 제방 설치 후 복원이 어려워므로 제방 축제 여부에 따라 필요성을 명확히 명시</li> <li>- 하폭확장 및 하도정비로 인한 건천화·직선화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배제</li> <li>- 유로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하천구간을 명시하고 변경 전·후의 잠재적 위험성을 비교·검토하여 유로변경계획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확보</li> <li>-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고가 크지 않거나 현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현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li> <li>- 제방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의 면적이 작거나 시설제방의 여유고가 미미한</li> </ul>	<p>수준일 경우, 일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제방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안계획은 현 호안의 식생확장 상태와 제방 안정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 여부를 판단</li> <li>- 재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인장이 충분한 경우,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li> </ul> <p><b>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b></p> <p><b>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b></p> <p>○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시설물 지양) 계획하천 중 남강과 함양위천, 구룡천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우천은 자연공원이 일부 지정되어 있음(초안 366쪽). 또한 계획하천에는 10개소의 습지가 분포하는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보전가치가 있는 상기한 지역에 개수계획이 수립되어 하천환경 및 경관의 훼손이 예상되므로(초안 363, 371쪽),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시설물 설치를 지양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지정 위치 토지이용현황, 이력거리, 개수계획 등을 토면으로 작성하고 하천시설물 설치의 적정성을 명시</li> </ul> <p><b>III. 기타사항</b></p> <p>○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제시한 세부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제시하여야 함</p> <p>○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권과는 조사자 인식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li> <li>-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li> </ul> <p>○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물</p>
<p>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6/8)</p>	<p>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7/8)</p>
<p>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 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li> </ul> <p>문.</p>	<p>-</p>
<p>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8/8)</p>	<p></p>

2) 경상남도

<div style="text-align: center;">  <p>경 상 남 도</p> </div> <p>수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남강 최상류면역 하천기본계획(하천계획과장)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286호(2021.1.25.)와 관련하여 남강 최상류면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p> <p>1. 사업계획 가. 계획명 : 남강 최상류면역 하천기본계획 나. 위 치 : 경남 함양군 안외면, 유림면, 서상면, 서하면, 지곡면, 병곡면 일원 다. 계획범위 : 함양군 관내 지방하천 12개소(하천연장 129.36km) 라. 계획내용 - 제방 및 호안 : 축제(20,589m), 보축(22,294m), 호안(1,170m) - 배수시설물 : 준치 231개소, 개설 236개소 - 보 및 낙차공 : 준치 139개소, 개설 120개소</p> <table border="1" data-bbox="252 723 732 1090"> <thead> <tr> <th>답답</th> <th>검토 및 협의 의견</th> </tr> </thead> <tbody> <tr> <td>수질정책달달</td> <td>○ 계획에 따른 공사 진행 시 지하수 이용 현황을 확인하여, 관정 폐공 또는 개방·이용 시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위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td> </tr> <tr> <td>수질보전달달</td> <td>○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공사 중 토사 또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하며, 예상치 못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인근 공공수역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강구, 이행하여야 함. ○ 공사 시행 중 설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계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함양군과 협의할 것.</td> </tr> <tr> <td>수계관리달달</td> <td>○ 사업 계획지역(함양군 안외면 등 6개 면 일원)은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단위유역 남강시)으로 중 개발사업 계획 시행에 따른 지역 개발부하량을 함양군으로부터 할당받아야 함. ○ 계획에 따른 향후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퇴적물 등의 오염물질 및 유류 유출 등으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td> </tr> </tbody> </table>	답답	검토 및 협의 의견	수질정책달달	○ 계획에 따른 공사 진행 시 지하수 이용 현황을 확인하여, 관정 폐공 또는 개방·이용 시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위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	수질보전달달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공사 중 토사 또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하며, 예상치 못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인근 공공수역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강구, 이행하여야 함. ○ 공사 시행 중 설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계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함양군과 협의할 것.	수계관리달달	○ 사업 계획지역(함양군 안외면 등 6개 면 일원)은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단위유역 남강시)으로 중 개발사업 계획 시행에 따른 지역 개발부하량을 함양군으로부터 할당받아야 함. ○ 계획에 따른 향후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퇴적물 등의 오염물질 및 유류 유출 등으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table border="1" data-bbox="858 353 1342 562"> <tr> <td>상수도달달</td> <td>○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저축 시 함양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실시실제 시 하천 정비로 인한 급수단절 및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급수 피해가 없도록 하천구역 내 상수관로 매설 및 친수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함양군 상수도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td> </tr> <tr> <td>하수도달달</td> <td>○ 하수도법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 등 하수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가능 여부 및 유입농도, 유입시기, 하수도 침입자투입량,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함양군 하수도부서와 협의 하여야함.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한 구체적 처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td> </tr> </table> <p>코관 : 준치 133개소, 개설 101개소</p> <p>2. 검토의견 붙.</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table border="1" data-bbox="858 913 1342 1108"> <tr> <td>주무관</td> <td>이원우</td> <td>주무관</td> <td>황형성</td> <td>주무관</td> <td>전우희</td> <td>주무관</td> <td>김경환</td> </tr> <tr> <td>주무관</td> <td>조시현</td> <td>주무관</td> <td>남경희</td> <td>주무관</td> <td>조용철</td> <td>주무관</td> <td>김경환</td> </tr> <tr> <td>합조자</td> <td>함양군</td> <td>합조자</td> <td>함양군</td> <td>합조자</td> <td>함양군</td> <td>합조자</td> <td>함양군</td> </tr> </table> <p>전화번호 055-211-6735 팩스번호 055-211-6719 / mms1003@korea.kr / 비공개 영역 어디서나 24시간 문자입으로 민서게을 '문서24'</p>	상수도달달	○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저축 시 함양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실시실제 시 하천 정비로 인한 급수단절 및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급수 피해가 없도록 하천구역 내 상수관로 매설 및 친수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함양군 상수도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하수도달달	○ 하수도법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 등 하수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가능 여부 및 유입농도, 유입시기, 하수도 침입자투입량,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함양군 하수도부서와 협의 하여야함.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한 구체적 처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주무관	이원우	주무관	황형성	주무관	전우희	주무관	김경환	주무관	조시현	주무관	남경희	주무관	조용철	주무관	김경환	합조자	함양군	합조자	함양군	합조자	함양군	합조자	함양군
답답	검토 및 협의 의견																																				
수질정책달달	○ 계획에 따른 공사 진행 시 지하수 이용 현황을 확인하여, 관정 폐공 또는 개방·이용 시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위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																																				
수질보전달달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공사 중 토사 또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하며, 예상치 못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인근 공공수역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강구, 이행하여야 함. ○ 공사 시행 중 설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계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함양군과 협의할 것.																																				
수계관리달달	○ 사업 계획지역(함양군 안외면 등 6개 면 일원)은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단위유역 남강시)으로 중 개발사업 계획 시행에 따른 지역 개발부하량을 함양군으로부터 할당받아야 함. ○ 계획에 따른 향후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퇴적물 등의 오염물질 및 유류 유출 등으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상수도달달	○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저축 시 함양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실시실제 시 하천 정비로 인한 급수단절 및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급수 피해가 없도록 하천구역 내 상수관로 매설 및 친수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함양군 상수도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하수도달달	○ 하수도법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 등 하수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가능 여부 및 유입농도, 유입시기, 하수도 침입자투입량,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함양군 하수도부서와 협의 하여야함.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한 구체적 처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주무관	이원우	주무관	황형성	주무관	전우희	주무관	김경환																														
주무관	조시현	주무관	남경희	주무관	조용철	주무관	김경환																														
합조자	함양군	합조자	함양군	합조자	함양군	합조자	함양군																														
<p>경상남도 검토의견(1/2)</p>	<p>경상남도 검토의견(2/2)</p>																																				



3) 함양군

 <p style="text-align: center;"><b>함 양 군</b></p> <p>수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서 제출 하천계획과-제521(2021. 1. 25.)호와 관련하여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p> <p>붙임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서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b>함 양 군</b></p> <p>주주관: 함양군청 기획과 (2021. 3. 29.)    접수: 환경계획과-1214 (2021. 3. 29.)          주소: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곡문로 35 / http://www.hypn.go.kr          전화번호: 055-960-8116    팩스번호: 055-960-8764 / ecogood1234@korea.kr / 비공개(5.6)          함양군청 기획과 부하과 어룡남고 소용환과기(2021. 3. 29.)</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서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b></p> <p>□ 현 황</p> <table border="1" data-bbox="858 465 1342 734"> <thead> <tr> <th>사 업 명</th> <th>위 치</th> <th>사 업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td> <td rowspan="10">함양군 소재(12) (남강, 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함양위천, 평정천, 옥계천, 평평천, 구룡천)</td> <td>수립 연장 : L = 129.36Km</td> </tr> <tr> <td>(남강) : L = 42.64Km</td> </tr> <tr> <td>대남천 : L = 2.80Km</td> </tr> <tr> <td>송계천 : L = 5.69Km</td> </tr> <tr> <td>지우천 : L = 6.22Km</td> </tr> <tr> <td>귀곡천 : L = 3.19Km</td> </tr> <tr> <td>안의천 : L = 11.22Km</td> </tr> <tr> <td>함양위천 : L = 24.70Km</td> </tr> <tr> <td>평정천 : L = 3.88Km</td> </tr> <tr> <td>옥계천 : L = 7.00Km</td> </tr> <tr> <td>평평천 : L = 5.51Km</td> </tr> <tr> <td>구룡천 : L = 10.58Km</td> </tr> </tbody> </table> <p>□ 검토의견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오염물질 등에 의한 수질오염 여부 등 환경에 대한 피해여부를 예측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산먼지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기적 살수, 공사차량의 속도 제한 및 차량 덮개 사용 실시</li> <li>-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를 위하여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준수하여 공사차량 속도제한 및 공회전 금지, 소음저감시설 설치 작업시간 제한 등</li> <li>- 특히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양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 최소화</li> <li>- 불필요한 시설물 진입지역 지양하여 식생훼손 최소화</li> <li>- 공사시에는 이 일대에 출현하는 일반적인 야생생물의 생활사(번식기)를 고려하여 개체수의 감소가 없도록 대책 필요</li> <li>- 계획용수량에 따라 제방의 여유고 및 둑마루목 계획하는 등 하천시설물 계획에 있어서 치수안정성과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호안 공법 적용하도록 계획 수립바람</li> <li>- 우천시, 갈수기 및 단계적 공사 도사용을 최소화 계획 수립바람</li> </ul> </li> </ol>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내 용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함양군 소재(12) (남강, 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함양위천, 평정천, 옥계천, 평평천, 구룡천)	수립 연장 : L = 129.36Km	(남강) : L = 42.64Km	대남천 : L = 2.80Km	송계천 : L = 5.69Km	지우천 : L = 6.22Km	귀곡천 : L = 3.19Km	안의천 : L = 11.22Km	함양위천 : L = 24.70Km	평정천 : L = 3.88Km	옥계천 : L = 7.00Km	평평천 : L = 5.51Km	구룡천 : L = 10.58Km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내 용																
남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함양군 소재(12) (남강, 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함양위천, 평정천, 옥계천, 평평천, 구룡천)	수립 연장 : L = 129.36Km																
		(남강) : L = 42.64Km																
		대남천 : L = 2.80Km																
		송계천 : L = 5.69Km																
		지우천 : L = 6.22Km																
		귀곡천 : L = 3.19Km																
		안의천 : L = 11.22Km																
		함양위천 : L = 24.70Km																
		평정천 : L = 3.88Km																
		옥계천 : L = 7.00Km																
평평천 : L = 5.51Km																		
구룡천 : L = 10.58Km																		
<p style="text-align: center;">함양군 공문</p>	<p style="text-align: center;">함양군 검토의견(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예정지 일원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여 위치하므로,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예측의 부적절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본 검토의견 외에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강구 및 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li> <li>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대상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개발 계획에 다른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함양군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야 함.</li> </ol>																		
<p style="text-align: center;">함양군 검토의견(2/2)</p>																		

나. 관계 행정기관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1) 낙동강유역환경청

구분	검토의견	조치내용	비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환경 평가과	<b>I. 총괄의견</b> ○ 본 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유림면, 서상면, 서하면, 지곡면, 함양면, 백진면, 병곡면 일원 남강 최상류권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검토의견임 - 남강, 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함양위천, 평정천, 오계천, 광평천, 구룡천(12개소, 129.36km)	-	-
	○ 12개의 지방하천을 하나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수행함에 따라 평가서 내 각 지방하천이 가지는 생태적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적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함. 이에 하천별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작성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12개소 각각의 지방하천이 가지는 하천별 특성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작성 하였음 - 남강 1개소 - 남강 지류 6개소(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 함양위천 1개소 - 함양위천 지류 4개소(평정천, 옥계천, 광평천, 구룡천)	반영
	○ 하천별 계획 수립 시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하되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에 대하여 개수계획을 지양하고 홍수방어 수단·방법 대안비교를 통하여 치수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보 및 낙차공 계획의 경우 하천의 연속성 및 수생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철거를 우선으로 계획	○ 개수전 수리검토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수위 부족구간은 축제계획 수립, 여유고 및 독마루폭 부족구간은 보축계획 수립, 호안의 파손 및 세굴 우려 구간은 호안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립공원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의 하천구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음 - 토지이용의 변화 및 대체수원 개발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의 경우 철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보 및 하상유지시설인 낙차공의 경우 시설물 능력검토 및 노후화 정도,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가설 및 보강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구분	검토의견	조치내용	비고
<p>낙동강 유역 환경청 환경 평가과</p>	<p><b>II. 세부 검토의견</b> <b>1. 계획의 적정성</b> <b>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b>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재해의 예방, 대응, 복구를 총괄하는 계획으로서 지역방재의 근간이 되는 하천재해위험 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때 하천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계획 하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및 금회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또한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환경 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계획하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관련 계획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물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p>○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 종합계획과 관련계획인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 ○추가적인 관련계획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조사하고, 추진중 및 계획중인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겠음</p>	<p>부분 반영</p>
	<p><b>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b> ○(세부계획 대안평가) 계획하천(12개소)의 주요 시설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천구간의 현황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에 따른 항목별 장·단점(이·치수적 효과 및 환경영향)을 비교·분석한 대안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개별 하천의 계획구간(또는 공간관리계획)별 제방 및 호안 설치에 관한 수단·방법 대안의 장·단점(필요성·환경영향) 비교·분석 - 주요 횡적시설물(보 및 낙차공)에 대해 계획대안(철거, 유지, 재가설)과 생태적 기법을 고려한 수단·방법대안의 장·단점(필요성·환경영향) 비교·분석 -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대안에 대해 주요 수용체(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단점)이 발생하는 경우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p>	<p>○시설물 설치 및 미설치에 대한 대안의 장·단점(이·치수적 효과 및 환경영향)을 비교·분석하여 세부계획에 따른 실효적인 대안평가를 수립·제시하였음 - 개별 하천시설물 계획구간별 표준단면도 계획 및 설치가능한 호안 계획 - 주요 횡구조물(보 및 낙차공)의 능력검토를 통한 계획 수립 및 하천의 중방향 연속성을 고려한 어도 및 여울형보 계획 -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에 대하여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함</p>	<p>반영</p>

구분	검토의견	조치내용	비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환경 평가과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 검토) 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확폭, 제방 및 호안 정비 등의 구조물 설치 위주의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최근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범위,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홍수관리구역 지정, 천변 저류지 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최근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 범위,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농경지, 가옥 등) 등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	반영
	<p><b>2. 입지의 타당성</b></p> <p><b>가. 자연환경의 보전</b></p> <p><b>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b></p> ○(지방하천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서 재구성) 본 평가서는 경상남도 함양군 관내 8개 면에 분포하는 지방하천 12개소의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서임.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한 하천의 환경·생태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천기본계획에 수립된 계획으로 인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나, 금번 평가서는 생태환경적 측면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수행하는 데 있어 12개소의 지방하천을 하나의 사업처럼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각 하천이 가지는 생태적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적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농경지, 도심지 및 산림을 통과하는 하천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 생물의 생태기능적 측면이 다양성을 판단하기에 포괄적인 평가서로 작성됨 더욱이 지방하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최소한 각 하천별 공간적 분포 및 생태환경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고 작성된 금번 평가서의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됨	○12개소 각각의 지방하천이 가지는 하천별 특성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작성 하였음 - 남강 1개소 - 남강 지류 6개소(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 함양위천 1개소 - 함양위천 지류 4개소(평정천, 옥계천, 광평천, 구룡천)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검토의견	조치내용	비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환경 평가과	<p>※하천의 규모와 분포위치를 고려할 때 동일한 생물상에 대한 사업계획의 영향여부는 생태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p>	-	-
	<p>○따라서 하천기본계획 수립대상 12개소 지방하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에 대해서는 각 하천별로 재구성하여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른 하천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영향예측 및 보존·보전·저감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야 함</p> <p>※현재의 구성체계는 각 분류군에 대한 하천별 현황을 서로 비교하는 결과로 사업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반면 각 하천별로 분류군의 현황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하천별로 검토할 수 있음</p>	<p>○동식물 종의 분포, 개체수 등은 지리적 요인(위도 등), 환경적 요인(수폭, 유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p> <p>○12개소의 지방하천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게 위치하여 지리적 요인에는 큰 차이가 없음</p> <p>○하지만, 남강, 함양위천의 경우 수폭이 큰 본류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10개소의 지방하천은 본류에 합류하는 지류로 볼 수 있음</p> <p>○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①남강, ②남강지류(대남천, 송계천, 지우천, 귀곡천, 안의천, 지곡천), ③함양위천, ④함양위천지류(평정천, 옥계천, 광평천, 구룡천) 총 4개로 분할하여 재구성하도록 하였음</p>	반영
	<p>&lt;평가서를 재구성한 후 아래의 항목들을 검토·제시&gt;</p> <p>○(하천 생태계 기능 보전) 사업대상 하천 구간 중 합류부, 저수역, 식생보전III등급지, 생태·자연도1등급지는 육수환경보전측면에서의 계획 수립이 필요함. 따라서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은 사업 시기에 따른 서식동물의 생활사(life history) 영향을 고려하는 등의 구체적인 생태계 영향을 분석하고 수변식생 원형보존, 황적시설물(보, 낙차공 등) 철거 등과 같은 차별화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저감 및 보전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 현재의 하천 굴곡성 및 구배를 유지하고 생태적 기능이 활발한 하천의 합류지점은 하천의 자연적인 연속성을 보전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p>	<p>○평가서를 재구성한 후 각 하천에 대하여 구체적인 생태계 영향을 분석하여 저감 및 보전대책을 수립·제시하였음</p> <p>- 하천의 굴곡성 및 구배를 유지하고 자연적인 연속성을 보전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p>	반영

구분	검토의견	조치내용	비고
<p>낙동강 유역 환경청 환경 평가과</p>	<p>○(보 및 낙차공 등 시설물계획) 해당 사업에서는 보 및 낙차공이 259개소 운영 중 임에도 시설물 현황(측점, 규모 등)만 제시되었을 뿐 시설물의 기능적 현황은 검토되지 않음. 또한 시설물의 횡적단절로 인한 수생태계 이동교란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시설물 철거계획이 아닌 존치, 모두 재가설 및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의 연속성과 수생태계 지속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은 계획으로 판단되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하천 연속체 기능을 저해하는 횡적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시설물 기능성 및 생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거를 우선으로 하되, 재가설 필요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 및 낙차공의 기능 분석 후 철거 및 존치 여부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li> <li>-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유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하천역에는 하상의 준위를 낮추고 소(뚝)를 형성하여 좁으로써 인공적 구조물의 보강 및 재가설을 억제토록 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li> <li>- 불가피하게 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단차 여울형 등 육수생물상의 분포구배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생태적 기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어도설치를 최소화</li> <li>- 어도설치 시 서식 어류의 생활사를 고려한 어도설치 계획 수립</li> </ul> <p>※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침서」(환경부, 2011) 219-227쪽 참조</p> <p>※ 「2017년도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례집」(환경부, 2017) [부록2] 여울과 소, 어도 설계 시 고려사항과 기술검토 기준(45-51쪽) 참조</p>	<p>○보 및 낙차공 등 횡구조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천의 통수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저해하는 횡구조물에 대해 철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기능유지(이수, 하상유지)가 필요한 경우 존치를 계획하였으며, 능력부족, 어도유무, 노후화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 및 낙차공의 실시계획시 어도설치 및 무단차 여울형 등을 대안을 비교하여 수상생물의 종적 연결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및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였음</p>	<p>반영</p>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검토의견	조치내용	비고
<p>낙동강 유역 환경청 환경 평가과</p>	<p>○(호안공사 친환경적 공법 적용) 하천에 적용할 예정인 호안공법들은 구간별로 명확한 형식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하천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이 되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검토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생의 도입을 저해(자연석 쌓기, 식생 옹벽, 석축쌓기 등의 형식)하고,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 적용은 지양</li> <li>- 하천생태계 복원에 실질적 효과가 있으며 식생의 도입이 우수하고 호안의 안정성도 유지하는 저렴한 환경친화적인 공법들을 조사, 비교하여 적용</li> </ul>	<p>○각 개수계획 지구별 유속 및 소류력을 검토하여 적용가능한 호안공법을 제시하여 추후 실시계획시 개수지구의 특성, 축제재료 및 방법, 호안의 종류, 재료 구득의 용이성, 지반의 지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p>	<p>반영</p>
	<p>○(하천생태 및 범정보호종을 고려한 정비 계획) 12개 지방하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수달, 삿, 원앙, 황조롱이, 붉은배 새매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문헌조사에서는 삿, 수달, 담비, 새호리기, 원앙 등 수변 및 하천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범정보호종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으로 인한 수계환경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수변-산림 생태계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구역의 정비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서식 생물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이를 일정 기간별로(격월제 또는 계절별) 나누어 실시</li> <li>- 건천화 현상을 보이는 하천 구간의 정비는 갈수기를 활용하도록 공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연중 수량을 유지하는 하천은 수중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시기를 가급적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에 반영</li> <li>- 출현·서식이 확인된 다양한 범정보호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반영</li> </ul>	<p>○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범정보호종에 대하여 야간공정 지양, 저소음 장비 사용, 단계적 공사계획 수립, 오탁방지막 설치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구역의 정비는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공사 실시</li> <li>- 건천화 구간은 갈수기를 활용하고 연중 수량을 유지하는 하천은 번식기를 가급적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계획 수립</li> <li>- 범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li> </ul>	<p>반영</p>

구분	검토의견	조치내용	비고
<p>낙동강 유역 환경청 환경 평가과</p>	<p>○(다양한 수변 식물 보전방안) 수변부에 다양한 식물 군락은 최대한 보전하고 우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생에 대하여서는 이들의 분포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귀화식물, 생태계 교란 식물종 분포의 증가는 수변생태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제거 및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화지수 및 현재의 교란 정도에 따른 교란 식물 제거방안 수립</li> <li>- 하천에 서식 및 번식하는 조류 및 어류종을 고려한 제거관리 시기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제거 및 관리방안 수립·제시</li> <li>- 생태계 교란식물 서식 지점을 생태·자연도에 하천의 위치와 함께 제시</li> </ul>	<p>○수변부에 분포하는 다양한 식물 군락은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며, 우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생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보전방안을 강구하였음</p> <p>또한, 귀화식물, 생태계 교란 식물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제시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화지수 및 현재의 교란 정도에 따른 교란 식물 제거방안 수립</li> <li>- 하천에 서식 및 번식하는 조류 및 어류종을 고려한 제거관리 시기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제거 및 관리방안 수립</li> <li>- 생태계 교란식물 서식 지점을 생태·자연도에 하천의 위치와 함께 제시</li> </ul>	<p>반영</p>
	<p><b>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b></p> <p>○(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고려) 계획하천인 남강 및 지우천 등에 기반암 하상, 토르, 포트홀, 판상절리 지형 등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지형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311-332쪽), 해당 하천에서의 사업 시행에 따른 지형유산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구간 원형보전, 세부 정비계획 조정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p>	<p>○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지형유산이 포함되어있는 하천은 남강 및 지우천으로, 남강은 1개소(No.23+700 인근 기반암)이며, 지우천은 7개소(No.4+500 인근 토르, 판상절리지형, 소, No.5+900 인근 폭포, 소, 토르, 포트)에 지형유산이 위치하여 있으며, 해당구간을 포함한 인근의 개수계획은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으며, 환경적 보전요인을 고려하여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p>	<p>반영</p>



구분	검토의견	조치내용	비고
<p>낙동강 유역 환경청 환경 평가과</p>	<p><b>3) 수환경의 보전</b></p> <p>○(적정규모의 개수계획 수립) 단순히 홍수량 크기에 따라 계획하천 전 구간에 동일한 수준의 홍수방어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향후 하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치수안정성, 하천의 자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방 월류에 의한 침수피해 가능성, 제방 보강을 통해 보호되는 면적과 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특히 과도한 하폭확장은 축제 및 횡적구조물의 재가설을 수반하고, 하천구역 편입에 따라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하폭확장을 계획하기보다는 기존 제방 상태, 하천 시설물, 토지이용 현황, 지형·지질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하폭을 결정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하천에서 발생한 홍수피해 이력(원인분석 포함)을 조사·제시</li> <li>- 설계기준(홍수량 크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 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과도한 치수계획 수립을 지양</li> <li>- 우수한 산림역과 연계된 하천 구간은 수변경관 및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li> <li>- 무제부 구간은 제방 설치 후 복원이 어려우므로 제방 축제 여부에 따라 필요성을 명확히 명시</li> <li>- 하폭확장 및 하도정비로 인한 건천화·직선화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배제</li> <li>- 유로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하천구간을 명시하고 변경 전·후의 잠재적 위험성을 비교·검토하여 유로변경계획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확보</li> </ul>	<p>○하천의 자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방 월류에 의한 침수피해 가능성,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강 최상류권역 내 지방하천(남강 등 12개소)유역내 주요 태풍 및 호우발생 현황 및 홍수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결과, 2002년 태풍“루사”, 2006년 태풍“에위니아”, 2012년 태풍 “산바”가 주요 홍수사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된 홍수량 및 최대수위는 약 30년~150년의 빈도로 조사됨</li> <li>- 또한, 각 홍수사상에 대한 홍수피해 원인 분석 및 침수피해 흔적을 조사하였음</li> <li>- 계획하천 기수립계획의 설계빈도는 50~80년 빈도로 조사되어 설계빈도가 50년으로 계획한 귀곡천 및 안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년은 1995년~2003년으로 최근의 이상강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빈도를 80년으로 상향하였으며, 설계빈도 계획시 유역의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야의 비율이 64.7~87.1%로 산지 하천의 형태를 보이며, 제내지 토지이용(농경지 및 산지)임을 고려하여 100년 이상의 설계빈도 상향은 지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li> <li>- 기백산 군립공원을 포함하는 지우천의 경우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함(보존지구)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였음</li> <li>- 계획하폭은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를 통한 현실성있는 계획하폭을 설정하였으며, 불필요한 하도정비는 지양토록 하고 과업구간 내 유로변경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음</li> </ul>	<p>반영</p>

구분	검토의견	조치내용	비고
<p>낙동강 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고가 크지 않거나 현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현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li> <li>- 제방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의 면적이 작거나 시설제방의 여유고가 미미한 수준일 경우, 월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제방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li> <li>- 호안계획은 현 호안의 식생활착 상태와 제방 안정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 여부를 판단</li> <li>- 재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유고 및 둑마루폭 부족구간은 보충계획을 수립하여 현하폭을 유지한 상태로 제방여유고를 확보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홍수위 부족구간이라도 제내지 토지이용현황 및 굴입하도 여부등을 검토, 월류가능성을 판단하여 제방계획을 수립하였음</li> <li>- 또한, 호안계획은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유속 및 소류력을 검토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한 식생의 활착상태 및 호안의 노후화 및 호안기초의 파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호안계획을 수립하였음</li> <li>- 교량 계획시 여유고 및 경간장이 모두 부족한 교량은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고 여유고 부족이 미미한 교량의 경우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함</li> </ul>	<p>반영</p>
	<p><b>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b></p> <p><b>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b></p> <p>○(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시설물 지양) 계획하천 중 남강과 함양위천, 구룡천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우천은 자연공원이 일부 지정되어 있음(초안 366쪽). 또한 계획하천에는 10개소의 습지가 분포하는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보전가치가 있는 상기한 지역에 개수계획이 수립되어 하천환경 및 경관의 훼손이 예상되므로(초안 363, 371쪽),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시설물 설치를 지양하여야 함</p> <p>-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지정 위치 토지이용현황, 이격거리, 개수계획 등을 도면으로 작성하고 하천시설물 설치의 적정성을 명시</p>	<p>○생태자연도 1등급지, 자연공원 및 습지 등 보전가치가 있는지역이 포함되어있는 하천은 남강, 지우천, 함양위천, 구룡천으로,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시설물 설치를 지양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p> <p>-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지정 위치, 이격거리, 개수계획 등을 도면에 제시하였음</p>	<p>반영</p>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검토의견	조치내용	비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환경 평가과	<b>Ⅲ. 기타사항</b>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제시한 세부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초안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 반영이 어려울 경우 적합한 사유를 제시하고 관련법에 따라 세부평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였음	반영
	○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 -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최대한 정량화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음 - 현황조사 결과는 「제12장 부록」 편에 조사자 인적사항 및 의견을 첨부하고, 영향예측 시 산정근거를 제시하였음 -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근거를 기술하고,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음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의견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 본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8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대한 반영여부」 편에 각 기관 및 주민의견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항목에 반영·제시하였음 - 의견에 대한 미반영부분은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토록 하였음	반영

2) 경상남도

구분	검토의견	조치내용	비고
경상남도 수질 관리과	<b>I. 총괄의견</b> ○ 계획에 따른 공사 진행 시 지하수 이용 현황을 확인하여, 관정 폐공 또는 개발·이용시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위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	○ 본 단계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지하수 이용현황의 경우 추후 실시계획시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지하수 개발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공사 중 토사 또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하며, 예상치 못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인근 공공수역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강구, 이행하여야 함	○ 수질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막, 사면덮개, 가배수로 등의 적정 저감시설을 계획하였으며,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하천 수질보전 및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 공사 시행 중 설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함양군과 협의할 것	○ 본 사업의 특성상 폐수발생은 없으므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치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사업 계획지역(함양군 안의면 등 6개면 일원)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단위유역 남강A)으로 동 개발사업 계획 시행에 따른 지역 개발부하량을 함양군으로부터 할당받아야 함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수립되지 않아 배출부하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수질오염총량 할당시기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실시계획단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함양군과 협의하였음	추후 반영
	○ 계획에 따른 향후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퇴적물 등의 오염물질 및 유류유출 등으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오탁방지막, 사면덮개,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류유출시 신속히 방제장비를 활용하여 하천으로의 유입을 차단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한편, 본 사업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은 제외함	반영
	○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저축 시 함양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본 계획하천인 함양위천과 지우천 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방안을 제시하였음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검토의견	조치내용	비고
경상남도 수질 관리과	○ 실시설계 시 하천 정비로 인한 급수단 절 및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급수 피 해가 없도록 하천구역 내 상수관로 매 설 및 취수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함양군 상수도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현재 기본계획 단계로 추후 실시설계 시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도 록 하겠음	추후 반영
	○ 하수도법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 등 하수 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정비기본계 획과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가능 여 부 및 유입농도, 유입시기, 하수도 원 인 부담금,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함양군 하수도부서와 협의 하여야함	○ 공사시 발생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로 유입처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불가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 획인 바, 추후 실시설계시 함양군 상하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오수처리계획을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한 구체적 처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추후 실시설계시 함양군 상하수도사업 소와 협의 후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 립·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3) 함양군

구분	검토의견	조치내용	비고
함양군 환경 위생과	<p><b>I. 총괄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오염물질 등에 의한 수질오염 여부 등 환경에 대한 피해여부를 예측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li> <li>- 비산먼지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기적 살수, 공사차량의 속도 제한 및 차량 덮개 사용 실시</li> <li>-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를 위하여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준수하여 공사차량 속도제한 및 공회전 금지, 소음저감시설 설치 작업시간 제한 등</li> <li>- 특히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양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 최소화</li> <li>- 불필요한 시설물 편입지역 지양하여 식생훼손 최소화</li> <li>- 공사시에는 이 일대에 출현하는 일반적인 야생생물의 생활사(번식기)를 고려하여 개체수의 감소가 없도록 대책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항목별 정량적인 예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였음</li> <li>- 공사시 주기적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차량 덮개 실시, 필요시 가설방진망 설치 등</li> <li>-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시행, 저소음장비 사용, 장비 집중투입 지양, 속도제한 및 공회전 금지 등</li> <li>- 조석 및 심야시간대 소음발생이 큰 작업은 피하고, 가급적 주간에 실시</li> <li>- 불필요한 시설물 지양을 통해 식생훼손 최소화</li> <li>- 야생생물의 번식기를 고려한 공사계획 수립</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홍수량에 따라 제방의 여유고 및 둑마루폭 계획하는 등 하천시설물 계획에 있어서 치수안정성과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호안 공법 적용하도록 계획 수립바람</li> <li>- 우천시, 갈수기 및 단계적 공사시 토사유출 최소화 계획 수립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속 및 소류력을 검토하여 적용가능한 호안공법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실시설계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li> <li>-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실시, 사면 구간 덮개 설치, 필요시 가배수로 설치, 오탁방지막 설치 등 계획 수립</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예정지 일원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여 위치하므로,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본 검토의견 외에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히 강구 및 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대상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개발 계획에 다른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함양군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오염총량 할당시기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실시계획단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함양군과 협의하였음</li> </ul>	추후 반영